



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[질의회신]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

국민신문고(1AA-1504-062470)에서 우리시 응답소에 20150414002832번으로 이송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.

□ 질의요지

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33조(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)와 관련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1층 필로티, 2층 및 3층 다세대주택이 가능한지

□ 답변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33조(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)에 「건축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라 “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” 로 정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(다세대 포함)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,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서울특별시

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04/21

협조자

시행 건축기획과-8187 () 접수)
우 100-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 31) 서울시청사 / 3층
전화 02-2133-7102 /전송 02-2133-0750 / yanghj@seoul.go.kr / 비공개